

세무회계저널
제7권 제2호 2006년 6월 pp.119~140
한국세무학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현실화 방안 연구

박성배* · 이명구** · 홍정화***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가맹 권장 및 사용 활성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실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상에 착안하여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간의 수입금액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업종별 차이, 면적별 차이, 사업장 위치별 차이, 기본경비 및 사업경력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여 수입금액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자 202명과 신용카드 미가맹자 164명에 대하여 수집된 자료를 t-test, ANOVA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있어서 업종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위치별 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면적별 신용카드 가맹점과 미가맹점간의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 및 사업경력에 따라 수입금액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와 사업장 면적은 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면세사업자의 사업경력은 수입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주제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실화, 신용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sbpark@kyungwon.ac.kr, 021-750-5217, 제1저자

** 이명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Im2378@hanmail.net, 011-208-2684, 공동저자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jhhong@kyungwon.ac.kr 031-750-5215, 공동저자(교신저자)

I. 서 론

부가가치세 제도의 도입은 조세수입의 증대와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투자촉진과 수출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세부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한장석·김용관 2005, 77-78).

현행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와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두어 세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한편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등 행정처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7.7.1 부가가치세 도입당시부터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던 중 1996.1.1부터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7.1부터는 1억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두어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 고려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문화 등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영세납세자들에게 납세편의의 제공목적으로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와 기초생활필수품으로서 농·수·축·임산물 등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나병우 2003, 1).

농·수·축·임산물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생산자 또는 수집상으로부터 면세품을 수집하여 매입자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및 계산서 발행기피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고 있으며 계산서 발행대상자가 수입금액의 은폐로 인하여 복식부기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산서를 미발행·미제출하고도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제도적 개선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서희열 2000, 12-17).

부가가치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세입 기준으로 36.2%, 간접국세의 7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세청 200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2003년도에 72.9%가 기초유지경비에도 미달하는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불공평으로 인하여 면세사업자의 과세정상화는 조세와 각종 사회보험부담금의 형평성 확보 및 조세정의 구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성실납세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기위하여 조세제도 및 행정방향 등의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 사례들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들이 불성실신고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못

1)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국세통계연보(2004년도)에 의함

하는 문제점들과 신용카드거래로 과세표준 현실화 및 세부담 증가 효과를 제기하는 것들이 있었으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관련 과세표준 현실화에 대한 연구사례는 없었다(이명구 2005, 3).

신용카드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신용카드사용이 일상화되고 거래내용이 과세자료로 통보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현실화에의 기여도가 매우 높아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한 효과가 매우 크다(홍성경 2003, 10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면세사업자의 업종별, 사업장 위치별, 사업장 면적별, 기본경비 및 사업경력별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신용카드 미가맹 사업자에 비하여 수입금액 양성화 및 현실화(이하“현실화”라 한다)가 진전되고 있는 전제하에서 보다 합리적인 수입금액 현실화 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도입배경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그 과세대상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면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문화·금융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면세기업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면세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만큼 조세경감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면세기업이 과세기업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기업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기업에 전가되지만 과세기업이 다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 면세기업으로부터 전가된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점이 있게 된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제도하에서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은 다음과 같다.

-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
- ② 수돗물
- ③ 연탄과 무연탄
- ④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⑤ 교육용역

- ⑥ 여객운송(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및 특정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제외)
- ⑦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및 방송
- ⑧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 ⑨ 수입시 면세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 ⑩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면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못한다³⁾.

2. 면세사업자의 실태

가. 면세사업자 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

〈표 1〉 개인 면세사업자 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개인)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인원	수입금액
합 계	637,113	554,820	725,720	623,457	875,095	796,129	975,209	1,017,028	959,632	980,265
농·임·어업	46,507	43,654	47,771	45,901	50,060	51,952	47,252	54,157	46,567	53,339
제조업	11,022	32,112	11,215	30,298	12,142	29,164	11,871	32,396	12,907	35,566
건설업	6,323	23,357	8,085	29,605	16,167	66,674	25,763	119,337	24,006	83,288
도매업	53,049	140,679	57,458	149,997	66,111	171,403	72,278	199,333	77,105	217,664
소매업	217,357	105,552	219,740	118,087	208,536	152,734	203,753	169,268	181,118	156,496
교육서비스	47,322	18,799	52,600	23,096	64,061	29,364	66,715	35,698	71,076	39,363
보건업	41,929	92,977	44,552	109,346	49,653	137,654	53,788	153,174	54,985	160,067
기 타	213,604	97,690	284,299	117,127	408,365	157,184	493,789	253,665	491,868	234,482

출처 : 국세통계연보(2000 ~ 2004)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47조 제1항 “특히 인적용역의 면세포기 대상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7조제2항 “면세의 포기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면세사업자 인원은 <표 1>에서와 같이 2004년 기준 합계 959,632명이며, 이중 소매업 181,118명으로 18.8%, 도매업 73,105명으로 8.0%,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71,076명으로 7.4%, 농·임·어업이 46,567명으로 4.8%이고, 면세사업자 2003년 수입금액 비중은 소매업 15조 6,496억원으로 16.0%, 도매업 21조 7,664억원으로 22.2%, 보건업 16조 67억원으로 16.3%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억원이다.

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규모별 현황

수입금액 규모별 현황은 <표 2>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수입금액 및 구성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4년도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가 699,185명으로 전체 면세인원의 72.9%를 차지하고,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하가 133,038명으로 13.8% 1억5천만원 이하 누계 비중이 8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규모별 현황(개인)

(단위 :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합계	637,113	100.0	725,720	100.0	875,095	100.0	975,209	100.0	959,632	100.0
4천8백만원 이하	466,463	73.2	535,690	73.8	646,881	73.9	708,777	72.7	699,185	72.9
1억5천만원 이하	98,987	15.6	105,939	14.6	119,744	13.7	136,600	14.0	133,038	13.9
3억원이하	38,280	6.0	44,787	6.2	53,646	6.1	60,361	6.2	61,783	6.4
10억원이하	27,013	4.2	32,147	4.4	45,104	5.2	56,463	5.8	52,851	5.5
10억원초과	6,370	1.0	7,157	1.0	9,720	1.1	13,008	1.3	12,775	1.3

출처 : 국세통계연보 (2000 ~ 2004)

다. 면세신용카드가맹자와 미가맹자의 1인당 수입금액 현황

신용카드가맹자와 미가맹자의 수입금액 현황은 <표 3>에서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2001년귀속 114백만원, 2002년귀속 113백만원, 2003년귀속 114백만원이나 신용카드미가맹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001년귀속 37백만원, 2002년귀속 47백만원, 2003년귀속 51백만원으로 카드가맹자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카드미가맹자에 비하여 업종별로 300% 내지 121.8%가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신용카드가맹자와 미가맹자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 현황

- 농·수·축·임산물 판매업 -

(단위 : 명, 백만원, %)

종목	구분	2001년 귀속			2002년 귀속			2003년 귀속		
		인원	수입 금액	1인당	인원	수입 금액	1인당	인원	수입 금액	1인당
계	가맹	514	59,479	116	481	55,688	116	821	55,107	67
	미가맹	436	16,586	38	316	15,218	48	280	14,270	51
곡물	가맹	47	11,553	246	43	5,966	139	36	3,418	95
	미가맹	79	3,327	42	52	2,769	53	40	1,996	50
채소	가맹	11	785	71	11	1,373	125	9	1,141	127
	미가맹	37	800	22	27	381	14	32	1,230	38
생화	가맹	78	1,378	18	79	1,331	17	79	1,381	17
	미가맹	13	102	8	11	74	7	9	48	5
기타	가맹	4	250	62	6	218	36	5	260	52
수산물	미가맹	11	361	33	10	445	44	12	315	26
축산	가맹	247	29,980	121	222	28,645	129	446	28,489	64
	미가맹	197	10,206	52	146	10,384	71	128	9,307	73
서적	가맹	127	15,533	122	120	18,155	151	246	20,418	83
	미가맹	99	1,790	18	70	1,165	17	59	1,374	23

출처 : 국세청 내부자료 (서울시내 K지역-2개구)

3. 선행연구의 검토

가. 면세사업자에 대한 선행연구

김유찬(1998)은 면세사업의 적용범위가 한정적으로 적용해야함에도 면세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데 대한 조세징의를 왜곡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최소한으로 서민들의 기초생활 필수품 및 관련용역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부업무대행단체들의 음식점 및 판매업 등은 과세로 전환되어야 할 분야로 주장한다.

서희열(2000)은 납세환경의 개선으로 납세의식 전환 등이 필요하고 계산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내지 세액공제 형태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카드회사에서 대금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일정율을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도입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화하여 실질적으로 증빙서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선행연구

유시권(1996)은 199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제 정착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광(1995)도 정부는 기준율이나 표준율에 의거한 편의주의 징세를 포기하고 정확한 기장에 의한 신고를 세무행정 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고, 또 간이과세제도는 납부세액의 근거가 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공평과세 정신에 위배되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시행여 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윤(1995)은 현행 법률체계상 간접법에 의한 부가가치계산의 틀을 깨뜨리고, 행정부 편의대로 과세할 수 있고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근거과세 바탕을 무너뜨리므로 간이과세제도를 도입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김차환(1996)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자료가 노출되어 과세표준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권장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사용토록 유도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송쌍중(1997)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거래징수의무도 없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 무도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외형거래액을 속인다면 탈세가 얼마든지 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즉, 1995년까지 연간 외형 3천 6백만 원(보통의 경우)미만인 개인만이 비교적 자유로운 탈세가 가능 하였던 것을 1996년부터는 연간 외형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이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이 탈세하도 록 법제도가 보장하여 주는, 모순의 범위를 지나치게 큰 폭으로 넓혀주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거래징수를 고의로 회피하면서 외부구입(매입)을 행하고 그 매입에 관련된 매출액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거기에도 하나의 제도 가운데에 이질적인 제도가 두 가지 씩이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어긋난다. 윤인석(1999)의 신용카드 사용자의 과세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 부담의 증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희열(2000)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에서 납세환경의 개선으로 납세의 식 전환 등이 필요하고 계산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내지 세액공제 형태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개선방 안으로 카드회사에서 대금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일정율을 소 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도입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화하여 실질적으로 증빙서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창남(2002)은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업종별 세 부담의 차이 해소 즉, 부가가치 적용률 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 부담의 차이가 높게 나타나고, 적으면 적을수록 세 부담의 차이는 감소하게 됨 을 알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 적용률이 높을수록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세 부담의 차이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간 이과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 적용률을 적절히 조정하여 세 부담의 차이를 없애도록 하 면 된다. 그리하면 굳이 간이과세자로 남을 이유가 없어진다.

둘째, 과세자료 양성화를 통한 일반과세자로 전환 유도를 위해서 과세자료의 양성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과세표준 양성화 추이에 따라서 간이과세 범위의 축소를 지 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과세자료 양성화 방안으로는 기장의무를 부여하여

실제 거래를 노출시키도록 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입을 통해 거래자료의 양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중앙경영조합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프랑스의 협의과세제도가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의 확정 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가 합법적으로 주어지고 또한 과세자료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수집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수집되는 과세정보는 그 효력이 없으며, 납세자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제도가 인상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나병우(2003)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순응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간이과세제도가 계급계산서 수취기피, 세부담의 불공평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 및 효율성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 보호의 취지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 신용카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성현호(1999)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부가세과세표준이 100%양성화되는 경우 예상총세수 증가액을 3조 9천억원으로 추정하였고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수수료부담 증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김차환(1996)은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자료가 노출되어 과세표준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권장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사용토록 유도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맹기(2000)는 거래당사자들이 현금결제를 선호하며 과다한 수수료부담 때문에 신용카드수취기피하며 특히 과세특례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두려워하여 신용카드거래를 꺼리고 세금계산서 수취도 기피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실제매출보다 현저히 적게 신고하는 현실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문화의 정착과 수수료의 인하 그리고 세제상 가맹점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윤인석(1999)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조현준(1987)은 신용카드사용자의 사용용도와 패턴에 따라 업종별 수입현실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착안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희열(2001)은 현행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50%인 5%로 낮추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3%~6%에서 1%~3%대로 내려야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공제세율을 100분의 5로 상향조정 할 것을 주장하였다.

홍성경(2003)은 신용카드결제액이 증가할수록 매출과세표준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매출증가율 이상 매입도 증가하지 않으며 음식점에서 의제매입액 증가율도 매출증가율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음식점사업자의 매출과세표준이 타 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함을 확인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연구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비교

본 연구는 면세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자와 미가맹자간에 평균 수입금액의 차이와 업종, 규모,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수입금액 현실화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 및 사업장 면적 따른 수입금액 현실화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여 과세양성화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는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확대로 수입금액 및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일반적 개괄적 연구이었으며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여부 및 업종별 연구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면세사업자 중 업종, 규모, 사업장위치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자와 미가맹자간의 수입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 검토하여 신용카드 가맹 및 활용의 실효성을 제증명하고 업종, 사업장규모, 사업장 위치, 취급상품 등 특성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신용카드가맹 권장·활용을 통한 과세표준을 양성화 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와 유사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현실화에 대한 전반적 기여 정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비교하여 본 연구는 면세사업자 중 사업장 위치별 신용카드 가맹과 미가맹에 따라 1인당 수입금액 현실화도의 차이를 규명하여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홍성경(2003)은 신용카드 증가에 따른 매출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매출증가에 따른 세 부담증가는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음식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에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면세사업자중 수입금액 불성실 혐의가 많은 사업자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신용카드가맹 권장 및 사용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넷째, 서희열(2000)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방안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유도를 위하여 소득공제 내지 세액공제 형태의 개선방안을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가맹과 함께 업종, 사업장 위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현실화 정도를 파악하여 단계별 신용카드가맹의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인 면세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과 미가맹에 따른 1인당 수입금액(이하 사업장별 평균 수입금액을 의미한다)에 대한 차이 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즉, 면세사업자의 업종, 사업장 면적, 사업장 위치, 기본경비 및 사업경력별 수입금액 차이분석과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 사업경력 및 사업장 면적이 수입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한다.

가. 신용카드 가맹여부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한 가설의 설정

면세사업자 중 쌀·곡물, 과일·채소, 축산·정육, 생선·수산물, 생화업에 대하여 업종별로 신용카드 가맹점과 미가맹점간 수입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가설 1]을 설정하였다.

면세사업자 중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과 미가맹점간 수입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면적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가설 2]를 설정하였다.

면세사업자 중 사업장 위치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과 미가맹점간 수입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장 위치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면세사업자 중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와 미가맹사업자의 1인당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면세사업자 중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와 미가맹사업자의 1인당 수입금액은 사업장 면적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면세사업자 중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와 미가맹사업자의 1인당 수입금액은 사업장 위치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나.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 및 사업경력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한 가설의 설정

면세사업자 중 기본경비와 사업경력에 따라 수입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 4] 및 [가설 5]를 설정하였다.

[가설 4]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에 따라 1인당 수입금액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와 미가맹사업자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5] 면세사업자의 사업경력에 따라 1인당 수입금액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와 미가맹사업자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다. 면세사업자의 사업경력, 기본경비 및 사업장 면적이 수입금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의 설정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사업경력, 기본경비 및 사업장 면적일 것으로 보아 다음의 [가설 6]을 설정한다.

[가설 6] 면세사업자의 사업경력, 기본경비 및 사업장 면적은 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목적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와 미가맹자간에 업종별, 규모별, 사업장위치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에 있어서 차이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며, 또한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 및 사업경력에 따라 수입금액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속변수는 1인당 평균 수입금액으로 하였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표본으로 수집된 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사업자 수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이다.

나. 독립변수

종속변수인 1인당 수입금액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여부, 사업장 위치, 사업장 면적 등을 들 수 있다. 즉, 지속적인 신용카드 가맹권장 및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확대 추세는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그리고 사업장위치가 도심의 변화가에 위치할수록 수입금액의 현실화 정도가 낮을 것으로 보며, 기본경비가 많을수록, 사업장 면적이 넓을수록, 종속변수인 1인당 평균 수입금액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이들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들 독립변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자 한다.

첫째, 신용카드 가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1개 이상의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를 가맹점으로 분류한다.

둘째, 사업장 위치는 수입금액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아 서울시내 중심가 및 변화가, 서울 외곽 일반상가와 도청소재지 및 광역시, 지방도시 및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사업장위치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업종구분은 표본자료 수집시 기재된 업종으로 한다.

넷째,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수입금액의 현실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사업장규모는 조사표에 기재된 사업장면적(m^2)로 한다.

다섯째, 사업자의 사업경력에 따라 수입금액의 현실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사업경력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며 사업 경력은 자료조사표에 기재된 경력으로 한다.

여섯째, 사업자의 기본경비는 수입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본경비에 따른 차이분석을 한다. 기본경비는 조사표에 기재된 경비구분으로 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가. 자료의 수집

표본은 전국의 면세사업자 중 자료수집 가능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하여 전국의 세무공무원 및 세무사들에게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면세사업자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와 미가맹사업자들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하여 수집가능한 연도인 2001, 2002, 2003년도 3개 년간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면세사업자 업종으로는 쌀·곡물, 과일·채소, 축산·정육, 수산·냉동 및 생화 등의 5개 업종별로 사업자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사업장소재지별로는 서울시내 역세권 및 변화가, 서울시내 일반상가, 지방소재지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자료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세무관계 종사자에게 제공한 조사표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표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연구자가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조사표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수입금액과 관련한 수집자료 조사표

(단위 : 만원)

구분	업종	소재지 구분	기본 사항	개업 경력	2001년 귀속			2002년 귀속			2003년 귀속			
사업자 번호	업태	변화가역 세권	집세등 총경비	판매 단가	수입 금액	카드 매출	일반 매출	수입 금액	카드 매출	일반 매출	수입 금액	카드 매출	일반 매출	신고 과표 비율
상호	종목	일반 상가	사업장 총면적	개업 경력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1기
신용카드 가맹	구체적 품목	외곽지 주택가	종사원 수	추정 수입	2기	2기	2기	2기	2기	2기	2기	2기	2기	2기

다. 통계분석방법

기술통계 및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두 집단의 평균값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설에서 짚지어진 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사용하고 세 집단 이상의 평균값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F-test(Analysis of Variance : ANOVA)를 사용하였다.

셋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의 분석

1. 표본자료의 구성현황 및 기술통계

수집된 표본의 사업장 위치별 분포를 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 역세권 및 변화가 110건, 서울시내 외곽 일반상가 129건, 지방소재 시·농어촌지역 127건으로 이루어졌다.

<표 5> 면세사업자의 소재지 위치별 현황

소 재 지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서울시내 역세권 및 변화가	110	30.05	30.05
서울시내 외곽 일반상가	129	35.25	65.30
비수도권 지방소재 시 및 농어촌	127	34.70	100.00
합 계	366	100.00	

수집된 면세사업자의 현황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202건 55.1%, 미가맹 164건 44.8%로 구분되고 있다.

<표 6> 신용카드 가맹점·미가맹별 현황

가맹 여부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신용카드 가맹	202	55.19	55.19
신용카드 미가맹	164	44.81	100.00
합 계	366	100.00	

수집된 자료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곡물 17.2%, 과일·채소 18.5%, 축산정육 18.0%, 생선·냉동수산물 11.4%로 구성되었다.

<표 7> 면세사업자 업종별 분포현황

업 종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쌀,곡물	63	17.21	17.21
과일, 채소	68	18.58	35.79
축산, 정육	66	18.03	53.82
생선, 냉동수산물 등	42	11.48	65.30
생 화	127	34.70	100.00
합 계	366	100.00	

수집된 자료를 개업경력별로 분류하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 미만 33.6%, 5년 미만 27.5%, 10년 미만 19.3%로 구성되었다.

<표 8> 면세사업자의 사업경력 현황

개업경력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5년 이상	34	9.29	9.29
15년 미만	37	10.11	19.40
10년 미만	71	19.40	38.80
5년 미만	101	27.60	66.40
3년 미만	123	33.60	100.00
합 계	366	100.00	

수집된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를 나타낸 것이 <표 9>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집된 표본의 사업장 면적은 76.7m², 종업원수 1.2명, 수입금액 103,879,081원, 월세 2,424,410원 총경비 3,377,542원으로 구성되었다.

<표 9>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업장면적(m ²)	272	3	3,305.8000	76.7612	229.0012
종업원수(명)	366	1	6	1.2213	0.7082
수입금액(원)	357	1,550	2,123,744,000	103,879,081	266,475,853
월 세 계(원)	352	0	90,000,000	2,424,410	8,355,910
총 경 비(원)	366	1,500	91,500,000	3,377,542	8,634,444

2. 가설검증

가. 신용카드 가맹여부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한 가설의 검증

(1) 신용카드 가맹여부에 따른 면세사업자의 업종별 차이분석

면세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자와 미가맹자에 대한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의 차이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자와 미가맹자간에는 생선·냉동수산물 및 생화 등의 업종은 수입금액에 있어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나, 쌀, 곡물과 과실, 채소 및 축산, 정육업 등의 업종은 수입금액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면세사업자의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미가맹점간의 차이분석

구분	카드가맹	N	수입금액 평균	표준편차	t	p
쌀, 곡물	신용카드가맹	23	231,879,377	455,751,418	1.3468	0.1831
	신용카드비가맹	39	100,811,668	310,010,417		
과실, 채소	신용카드가맹	19	79,720,612	87,703,766	-0.3587	0.7210
	신용카드비가맹	45	108,970,699	349,304,320		
축산, 정육	신용카드가맹	31	128,684,980	281,403,154	0.2860	0.7758
	신용카드비가맹	33	110,229,096	233,848,237		
생선냉동 수산 등	신용카드가맹	16	355,860,526	459,582,716	2.5065	0.0165
	신용카드비가맹	25	86,386,747	226,339,071		
생화	신용카드가맹	310	52,424,596	103,148,494	1.6518	0.0911
	신용카드비가맹	16	9,665,063	7,921,165		

위의 <표 10>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농·수·축·임산물인 면세업종의 경우 최종소비자인 가계의 전업주부를 상대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사용율이 낮아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와 미가맹자 간 수입금액의 차이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업종별, 카드가맹별 분산분석에 의한 개체간 효과검정을 한 결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10%하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신용카드가맹자 업종별 개체간 효과검증

종속변수 : 수입금액

소스	제 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1.867E+18 ^a	9	2.074E+17	3.074	.001
절편	3.852E+18	1	3.852E+18	57.096	.000
업종코드	8.673E+17	4	2.168E+17	3.213	.013
카드가맹	3.742E+17	1	3.742E+17	5.545	.019
업종코드*카드가맹	6.253E+17	4	1.563E+17	2.317	.057
오차	2.341E+19	347	6.747E+16		
합계	2.913E+19	357			
수정 합계	2.528E+19	356			

a. R제곱=.074(수정된 R 제곱=.050)

이상의 검증 결과로 볼 때 면세사업자의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있어서 대체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용카드 가맹여부에 따른 면세사업자의 면적별 차이분석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신용카드 가맹점과 미가맹점의 차이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검증 결과 수입금액이 사업장면적의 크기 및 신용카드 가맹여부에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검증 결과 신용카드 가맹점과 미가맹점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 면세사업자의 면적별 신용카드 가맹점과 미가맹점의 차이검증

면적	가맹여부	N	수입금액 평균	표준편차	t	p
30미만	가맹	36	36,445,661	71,392,277	0.0102	0.9919
	미가맹	65	36,181,575	145,174,717		
40이상	가맹	24	33,080,333	48,626,669	-0.0996	0.9210
	미가맹	31	34,643,087	63,805,565		
50이상	가맹	15	91,567,574	169,750,138	-0.4717	0.6407
	미가맹	16	130,933,263	278,160,884		
60이상	가맹	8	33,024,924	75,365,911	0.5893	0.5719
	미가맹	2	181,665	115,492		
70이상	가맹	9	250,934,285	453,646,779	1.2718	0.2206
	미가맹	10	66,702,081	69,458,273		
80이상	가맹	6	107,851,672	147,115,197	0.4824	0.6499
	미가맹	1	31,200,000			
90이상	가맹	23	122,161,057	332,531,537	-0.8287	0.4124
	미가맹	17	226,374,809	463,769,174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면적별로 신용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간 수입금액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된다.

(3) 신용카드 가맹여부에 따른 사업장 위치별 차이분석

면세사업자에 대한 지역별 신용카드 가맹과 미가맹간의 수입금액 차이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검증결과 평균수입금액이 신용카드가맹자와 미가맹자간에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3〉 면세사업자의 지역별신용카드가맹자와 미가맹자의 차이검증

소재지	카드가맹	N	평균수입금액	표준편차	t	p
서울시내역세권 및 번화가	신용카드가맹점	90	142,675,218	294,659,056	-1.3438	0.1819
	신용카드미가맹점	18	262,207,674	534,330,350		
서울시내 외곽 일반상가	신용카드가맹점	42	141,228	127,526	0.5573	0.5783
	신용카드미가맹점	86	129,261	106,981		
지방소재시군	신용카드가맹점	67	141,058,573	267,337,945	-0.8406	0.4023
	신용카드미가맹점	54	186,228,736	323,797,024		

이상의 면세사업자에 대한 분석결과 신용카드가맹과 미가맹간의 수입금액에 있어서 사업장 위치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된다.

나.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 및 사업경력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한 가설의 검증

(1)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에 따른 수입금액의 차이분석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별 신용카드 가맹여부별 분산분석에 의한 개체간 효과 검정을 한 결과 <표 14>에서보는 바와 같이 수입금액은 기본경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4〉 기본경비별 신용카드가맹여부에 대한 개체간 효과 검정

종속변수 : 수입금액

소스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7.101E+17 ^a	7	1.014E+17	1.441	.188
절편	2.420E+18	1	2.420E+18	34.381	.000
카드가맹	1.174E+16	1	1.174E+16	.167	.683
총경비_N	3.300E+17	3	1.100E+17	1.563	.198
카드가맹*총경기_N	3.035E+17	3	1.012E+17	1.437	.232
오차	2.457E+19	349	7.040E+16		
합계	2.913E+19	357			
수정 합계	2.528E+19	356			

a. R제곱=.028(수정된 R 제곱=.009)

위의 <표 14>의 결과로 볼 때,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에 따라 수입금액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4]는 기각된다.

(2) 면세사업자의 사업경력에 따른 수입금액의 차이분석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경력별 수입금액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표 15>와 같이 분산분석에 의한 개체간 효과검정을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은 사업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5>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경력별 가맹별 효과검정

종속변수 : 수입금액

소스	제Ⅲ유형 제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6.745E+17 ^a	9	7.494E+16	1.057	.394
절편	2.183E+18	1	2.183E+18	30.789	.000
카드가맹	5.276E+16	1	5.276E+16	.744	.389
개업경력	3.195E+17	4	7.988E+16	1.127	.344
카드가맹*개업경력	4.132E+17	4	1.033E+17	1.457	.215
오차	2.460E+19	347	7.091E+16		
합계	2.913E+19	357			
수정 합계	2.528E+19	356			

a. R제곱=.027(수정된 R 제곱=.001)

위의 <표 15>에서 분석한 결과를 볼 때 면세사업자의 사업경력에 따라 수입금액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5]는 채택되지 않는다.

다. 면세사업자의 사업경력, 기본경비 및 사업장 면적이 수입금액에 미치는 영향 검증

면세사업자의 사업경력, 기본경비 및 사업장 면적이 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6>에 나타나 있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은 기본경비, 사업장 면적으로 나타났으나 사업 경력은 수입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 사업경력 및 사업장 면적은 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표 16>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B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9,414,231.2499		0.2881	0.7735	
사업경력	-5,405,919.5961	-0.0338	-0.6299	0.5293	1.021724
총 경 비	111.1569	0.5531	9.5313***	0.0000	1.192515
사업장 면적	-188,961.0063	-0.1049	-1.8248*	0.0692	1.170567
R ² = 0.2687 F = 31.7180 p = 0.000					
종속변수 : 수입금액					

* p<0.1, ** p<0.05, *** p<0.01

다중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Variance Influence Factor : VIF)⁴⁾문제가 존재한다면 회귀계수를 정상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효과도 감소한다. 다중공선성의 검증은 VAF>10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나 여기에서는 VAF<10이므로 어떤 변수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현실화 방안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 및 출하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 및 현금영수증 발행의 활성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수·축·임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에 허점이 많아 매출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채소청과를 산지의 경작자인 농민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아무런 과세자료를 수수하지 아니하여 매입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채소 청과를 경작하는 농민의 경우와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사육, 채취, 출하하는 자들에게도 면세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 계산서를 제출하게 하여 각종 금융자금 이용,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도화함으로 유통과정의 자료를 양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구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곡물, 청과, 수산물, 축산물 등의 계산서 수취와 신용카드 구매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가 필요하다. 최종소비자인 주부들의 주된 소비생활시 수집한 농·수·축·수산물인 면세품목에 대한 계산서 및 신용카드구매 영수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제도를 제도화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 발행시 강력한 법적 규제 및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용카드 구매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복권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신용카드구매 영수증 및

4) 다중공선성(VIF)은 2개의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아주 높고, 각각의 변수가 특성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A,B 라고 했을 때, 2개의 변수가 동시에 특성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A+B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비해 서로 촉매작용을 하여 그것보다 훨씬 높은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한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를 활성화하여 면세사업자의 신용카드발행 및 현금영수증발행의 철저로 수입금액이 노출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가맹 권장 및 사용 활성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실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상에 착안하여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간의 수입금액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업종별 차이, 면적별 차이, 사업장 위치별 차이, 기본경비 및 사업경력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여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자 202명과 신용카드 미가맹자 164명에 대하여 수집된 자료를 t-test, ANOVA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간의 수입금액의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업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위치별 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면적별 신용카드 가맹점과 미가맹점간의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 및 사업경력에 따라 수입금액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와 사업장 면적은 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면세사업자의 사업경력은 수입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사업자 중 실제 수입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입금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장규모가 큰 업체가 수입금액을 불성실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면세사업자로 은폐되는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특히 중심가·변화가에 위치한 업소가 면세사업자로 계속 잔류하기 위한 불성실 신고상황을 파악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면세사업자의 기본경비 및 사업경력이 수입금액의 현실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와 미가맹사업자간의 차이점을 토대로 신용카드 확대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광윤. 1996.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세무학 연구 제7호: 25-45.
- 김유찬. 1998.5. 「VAT의 면세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김차환. 1996.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병우. 200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순응에 관한 실증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희열. 2001. “신용카드제도의 세법상 평가와 합리적 개편방안” 세무학연구 제18권 제2호: 229-260.
- _____. 200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1)” 국세 제11호: 78-100.
- 성현호. 1999.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현실화 방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쌍중. 1997.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파행성”. 월간 조세.
- 안창남. 2002. 「부가가치세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 유시권. 1996. 「부가가치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윤인석. 1999. 국내신용카드 시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구. 200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맹기. 2000.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거래 문제점.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준. 1987. 신용카드사용자의 특성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장석·김용관. 2005. 「부가가치세」 광고.
- 홍성경. 2003. 신용카드 활성화가 세부담증가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세청. 2004. 「국세통계연보」

A Study on the Method for the Income Realization of Exempted Taxpayers

Park, Sung Bae* · Lee, Myung Koo** · Hong, Jung Hwa***

〈Abstract〉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method for the income realization of exempted taxpayers who have engaged in agricultural, marine, livestock, and forest industry.

In order to examine data about exempted taxpayers, this study has gathered approximately 366 cases by categorizing the locations of business places as downtown in Seoul, other periphery regions in Seoul, metropolitan cities and the seats of provincial governments, local cities, and agricultural and marine industrial reg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income by classifying exempted taxpay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businesses into taxpayers who deal with credit cards(hereafter, the participants) and those who don't(hereafter, the nonparticipants) didn't shows significance. It is the reason that the usual customers are housewives and students who don't use credit card frequently.

Secon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income by distinguishing the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usiness places for exempted taxpayers shows that there aren't prominent differences, irrespective of their size.

Thir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tax bases according to the locations of the business places shows that there are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nonparticipants.

Fourth, the statistical verification for differences of income realization according to whether the basic expenditures of the business places were overpaid shows that the realizations of the nonparticipants aren't different much than those of the participants are.

Fifth, the statistical verification for differences of income realization according to careers of the business didn't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Sixth, the basic expenditure and the size of business places affected for the income of exempted taxpayers, but the careers of business didn't.

<Key words> exempted taxpayer, income realization, credit card participant and nonparticipant

* Professor, Kyungwon University

** President, Lee's Tax Firm

*** Professor, Kyungwon University